

	학과간교과목교차수강세부운영 규정	규정번호	3-4-14
		제정일자	2003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5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시행세칙 제12조(수강신청) 제9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대학 재학생으로서 타과의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(공통교양·융합교과목 포함)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시기 및 절차) ① 학과간교과목교차수강은 제1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하다.

② 타과 수강 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은 교무입학처에서 공고하는 기간에 해야 하며, 학과에서는 소속학과장 및 수강 희망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입학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조(허용범위) ① 수강 가능한 교과구분은 교양선택, 전공(또는 전공선택)으로 한다.

② 현장실습 등 학과의 사정에 의해서 한 학기 수업분을 8주로 중복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은 수강을 불허한다.

③ 수강인원(분반시)이 40명이상일 경우 불허를 원칙적으로 하나 수강희망 학과의 학과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타과 수강생으로 인한 증가인원은 수강인원 산출시 제외한다.

제5조(운영) 교차 수강한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“인접선택”으로 표기한다. 다만, 공통교양 및 융합교과목에 대하여는 “교선” 또는 “전공”으로 표기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